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 외 11명
- 의안번호 : 제2020호
- 발의일자 : 2024년 8월 1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 안 이 유

- 「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」 별도 제정에 따라 별표 1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별표 1 중 서울식물원란을 삭제함(별표 1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식물원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(「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」)로 제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(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)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 조례 제15조(공원입장료 및 이용료)제1항과 별표 1 및 별표 2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¹⁾.
- 본 조례안은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의 운영관리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」과 중복된 별표 1 서울식물원의 공원입장료(온실 및 주제정원)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1)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15조(공원입장료 및 이용료)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※별표 1 및 별표 2는 [붙임] 참조

[붙임]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

[별표 1]

공원입장료(제15조제1항 관련)

공 원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
서 울 대공원	동물원	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	3,000~6,000 2,000~4,000 1,000~2,000
	테마가든 (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)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~4,000 1,500~3,000 1,000~2,000
서울식물원	온실 및 주제정원	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	5,000~10,000 3,000~7,000 2,000~5,000
※(주) ○ 어린이 : <u>6세 이상 12세 이하</u> ○ 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 ○ 어 른 : 19세 이상 65세 미만 ○ 단 체 :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			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

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
				체육경기	기타행사	
공 통	잔디광장		1㎡당, 2시간	20~4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 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	일반운동장(광장)			5~10	10~20	
	축구장	잔디	1회 2시간	120,000 ~ 156,000	300,000 ~ 390,000	
		인조 잔디		55,000 ~ 82,500	110,000 ~ 143,000	
	풋살 경기장	10인용		25,000~32,500		
		6인용		15,000~19,500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
	야영장(캠핑장)	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	
			전기 1회당	3,000~5,000	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	
	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	
	사진·영상 촬영녹화	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	
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	1회당 (1일당)	1,000~20,000			
강의실		1㎡당, 1시간당	200~300			

	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	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◦ 키 140cm 이상 	
	국궁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◦ 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 	
		1개월	20,000~40,000	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◦ 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징수 	
남 산 공 원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이상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이하)	3,000 ~ 6,000 2,000 ~ 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	
서울 대공원	성인 야구장	1일	70,000~ 91,000	200,000 ~ 26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 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3시간	42,000~ 54,600		
	리틀 야구장	1일	35,000~ 46,000	100,000 ~ 130,000	
		3시간	21,000~ 27,300		
	서울대공원 캠핑장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 ~ 4,000 1,500 ~ 3,000 1,000 ~ 2,000		